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농민교육원 기능의 변천

- 68. 2. 15 농촌지도자를 양성하여 과학적인 영농기술의 보급과 생활개선을 도모
코자 순수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원장을 겸임하
는 사업소로 설립됨.
 - 농촌지도직의 교육훈련
 -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강습
 - 기타 농민교육에 필요한 사항
- 74. 10. 30 거국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마을정신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민정신교육이 추가되는 동시에 전임교육원장이 신설되고
- 82. 2. 26 농촌근대화 역군이 될 수 있는 영농후계자 양성 및 영농기술보급을 위
한 기능이 추가변경되었고 (영농기술교육, 농기계훈련)
- 사회교육어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농민교육에서 도민전체를 대상으로한
사회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농업의 <농>자를 기피하고 있어 각급 농대·농고의 명칭을
개명하는 실정이고

- * 고려대학교·중앙대학교의 농과대학명칭을 자연자원대학·산업대학으로 개명한
바 있으며 농업계고등학교 96개 전국농업고등학교중 56개교가 실업고등학교·중
합고등학교로 명칭변경

다. '91년도 도의회의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57페이지)에서 농민교육원 교육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동의식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바라는 등

라. '80년 이후 농업인구 감소와 사회적 주민의식의 변화등으로 전도민의 사회교육기관으로 변화되었으므로 현실에 맞추어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조례명을 변경하면서 불합리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고 '91. 3. 19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바 '92. 4. 14 승인되었기 도의회외 의결을 거쳐 개정코저 함.

마. 참고사항

(년도별 교육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일반정신교육		영 농 교 육		상공·직업교육		비 고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계	77,638	100%	44,479	57.3	31,844	41%	1,315	1.7%	
80년이전	23,484	100	10,385	44.3	13,099	55.7	-		
81~85년	24,553	100	17,486	71.2	6,052	24.6	1,015	4.2	
86~91년	24,501	100	13,558	55.3	10,643	43.4	300	1.3	
92년계획	5,100	100	3,050	60	2,050	40	-	-	

(충청북도인구의변화)-'68년보다 농업인구 35% 감소

- 68년도인구 1,537,436명중 농업인구 1,006,832(66%)
- 80년도인구 1,424,243명중 농업인구 744,656(52%)
- 90년도인구 1,414,295명중 농업인구 433,050(31%)
- 91년도인구 1,432,273명중 농업인구 404,895(28%)

(농민교육원 명칭에 대한 여론)-강사·피교육생 1,372명 설문조사결과

- 변경해야 된다 1,363명(99.3%) (강사34, 피교육생 1,329)
- 변경할 필요없다 9명(0.7%) (피교육생 9)

2. 주요골자

- 조례명중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변경
- 제1조(설치)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교육원을 둔다”를
“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적영농기술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교육
원을 둔다”로 변경
- 제3조 업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
 - 새마을교육 → 도민일반교육
 - 농기계훈련 → 농기계교육
 - 교육용 각종 실습장 운영 → 기능교육훈련
 - 기타 농촌 근대화시책상 필요한 교육 →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
- 제4조 원장의 임무중 단서규정인 제3조 제3항내지 제5호의 업무(농기계훈련·교육
용 실습장운영·기타 농촌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된 규정은 조직의 원리에 위배된 명령권의 2원화로서 교육계획수
립시 사전협의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삭제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
- 충청북도 농민교육원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4. 기타참고자료 : 별첨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를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영농기술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업무)중 각호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민정신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교육
4. 기능훈련교육
5.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4조(원장) 제2항중 "지휘감독한다" 다음에 "다만 제3조, 제3호내지 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조 표

현 형	개 정
<p>지명 :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예</p> <p>제1조 (설치) 농촌근대화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농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훈련 4. 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 5. 기타 농촌근대화시책상 필요한 업무 <p>제4조 (원장) ①</p> <p>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3호내지 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지명 : 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예</p> <p>제1조 (설치) 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영농기술 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민정신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교육 4. 기능훈련교육 5.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 <p>제4조 (원장) ①</p> <p>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하삭제</p>

참 고 자 료

관 련 법 규 및 기 타 참 고 자 료

관련근거법령(부분발췌)

•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 전문개정)

제 104 조 (직속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직속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내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5 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1988. 5. 7 대통령령 제12444호)

제 40 조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1. 원격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관사무를 분장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③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내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1968. 2. 15 조례 제278호)

개정 1970. 5. 5 조례 제 359호	개정 1982. 2. 26 조례 제1183호
1970. 12. 15 조례 제 463호	1982. 4. 29 조례 제1192호
1974. 3. 8 조례 제 607호	1982. 6. 21 조례 제1199호
1979. 9. 17 조례 제 958호	1986. 3. 14 조례 제1475호
1980. 9. 15 조례 제1031호	1987. 7. 18 조례 제1551호

제 1 조 (설치) 농촌근대화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농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 2 조 (위치) 교육원은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에 둔다.

제 3 조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새마을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훈련
4. 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
5. 기타 농촌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 4 조 (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3호나지 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공무원) 교육원에 원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6 조 (강사초빙) ① 원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원생의 숙식제공) 원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8 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5. 5.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
례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농민교육
원이 명실상부한 도민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철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보고